

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 
동의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10. 23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# 「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36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 
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 
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  
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 
나.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 
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 
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※ 호우 피해 지역인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\*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우선 선포(23.7.19.)

\* 13개 지자체: 세종시, 충북(청주시, 괴산군), 충남(논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 
부여군), 전북(익산시, 김제시 죽산면), 경북(예천군, 봉화군,  
영주시, 문경시)

### 3. 주요 내용

#### 가. 감면대상자

-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라 함)
-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함)

#### 나. 감면내용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(구세)를 면제한다.

#### 다. 기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### 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
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조 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

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## ○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중 '구세'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려는 것으로,<sup>1)</sup>
-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고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감면규모는 총 2건으로서 76,580원으로 추계하고 있음.

## 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“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”라고 명시하고 있음.

한편,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「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」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호우로

---

1) 2023년 재산세 중 '시세'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의결 완료(2023.9.15.)

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면제를 통해 호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세 부담 경감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세특례제한법

**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(지방세 감면율·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·적용 대상자·세목·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)하는 지방세 감면
2. 「지방세법」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
3. 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
4.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. 다만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

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5.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##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**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**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